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송도랜드마크시티 8공구 M1블록)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6.12.30.)[시행 2017.3.31.]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 2, 3순위' 방식을 → '1, 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수도권 1순위 발생 요건이 기존 '2년 24회 납입' → '1년 12회 납입'으로 변경
  - 특별공급 청약자격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시 청약제한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 '60㎡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임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 06. 29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주택 순위별로 공급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세대는 수도권 지역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세대 등은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2항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공급하고, 60%를 추첨제로 공급하며,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8번지 일원에 설치되며 당사 홈페이지(http://www.central-thesharp.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제정 · 시행으로 최초 분양계약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확대되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전매금지
  - 본 아파트(공동주택)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법시행령」 제73조의1 제3항에 의거하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7.07.18)로부터 주거전용면적 구분없이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
  - 본 주택의 당첨자 및 세대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조정대상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 주택의 1순위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09.25)으로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로 전산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에 제한되고 제1순위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투기자 처벌 「주택법」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신청자보다 우선 배정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하층을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 8221호(2017.06.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1, 311-1번지 (송도국제도시 6 · 8공구 M1블록)

▣ 대지면적 : 총 대지면적 79,305.9000㎡ 중 공동주택 대지면적 53,069.7495㎡(아파트 중 근린생활시설 제외)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3층, 지상49층 8개동 총 2,230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66세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22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2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6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면적-㎡)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기준)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	주택공급면적 주거공용	주택공급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계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일반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세대수	입주예정시기
민영주택	2017000804-01	84.9999A	84.9999	30.9356	115.9355	40.2517	156.1872	23.0816	1,126	112	112	112	112	32	646	24	2020년 8월 예정
	2017000804-02	84.7966B	84.7966	32.5855	117.3821	40.1552	157.5373	23.0264	368	36	36	36	36	10	214	8	
	2017000804-03	84.8166C	84.8166	32.6643	117.4809	40.1647	157.6456	23.0318	184	18	18	18	18	4	108	4	
	2017000804-04	95.8548	95.8548	36.0815	131.9363	45.3918	177.3281	26.0293	552	–	55	54	–	16	427	12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지분은 연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지분을 배분하였으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으며, 아파트(공동주택)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타입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근린상가로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220세대 / 주택건설량 10%범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84A	84B	84C	95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50%)	56	18	9	27	110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56	18	9	27	110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자녀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3호(2016.12.23)]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배 점 기 준 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배점기준 점수	비 고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임신중에 있는 태아 포함, 입양자녀 포함) 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 거주 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이상 ~ 10년미만	15	
		1년이상 ~ 5년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166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건설량 10%범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84A	84B	84C	95	합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50%)	56	18	9	–	83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56	18	9	–	83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함,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함, 이하 같음)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개정 2015.12.29, 국토교통부훈령 제638호)」에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구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5,596,59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861,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6,715,914원 이하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무주택세대구성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인 자)이하여야 함.(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송도 랜드마크시티 8공구 M1블록) 오피스텔 입주자모집공고

▣ 본 오피스텔은 건전한 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2017-분양신고-6호(2017.06.28)로 분양신고 수리

▣ 본 건축물은 주택법제 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임. [승인번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17-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4369)]

▣ 공급대상물 (오피스텔 / 금회 판매시설 제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1, 311-1번지
- 건축연면적 : 전체 539,068.7427㎡ 중 오피스텔 162,344.8307㎡
-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 공급규모 : 지하3층 ~ 지상49층 12개동 중 8개동 공동주택(2,230세대), 4개동 오피스텔 (1,242실), 판매시설 중 금회분 오피스텔 총 1,242실
- 층별용도 : 오피스텔동(201동~204동) 지상1층~지상2층 판매시설, 지상3층-지상43층 오피스텔 /B3~B1 주차장, 기계실 등
- 주차대수 : 총 4,272대 (아파트 2,885대, 오피스텔 1,247대, 판매시설 134대, 근린생활시설 6대)

▣ 공급면적

(단위 : 실, ㎡)

타입	공급실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	대지지분
29㎡	324	29.9199	14.4575	44.3774	1.6319	13.0129	59.0222	8.5064
59㎡ A	108	59.8740	26.3338	86.2078	3.2658	26.0408	115.5144	17.0226
59㎡ B	36	59.3899	25.8420	85.2319	3.2394	25.8302	114.3015	16.8849
84㎡ A	234	84.8020	36.8399	121.6419	4.6255	36.8826	163.1500	24.1098
84㎡ B	270	84.9588	36.7963	121.7551	4.6341	36.9508	163.3400	24.1544
84㎡ C1	80	84.8688	38.2358	123.1046	4.6291	36.9117	164.6454	24.1288
84㎡ C2	73	84.9679	37.9454	122.9133	4.6345	36.9548	164.5026	24.1570
84㎡ C3	117	84.8976	37.4084	122.3060	4.6307	36.9242	163.8609	24.1370

▣ 공급금액

(단위 : 원)

군	타입	동 (호수)	공급실수	구분	해당실수	토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금 1차 계약시	계약금 2차 17.08.18	중도금 1차 18.03.19	중도금 2차 18.07.18	중도금 3차 18.11.19	중도금 4차 19.05.20	중도금 5차 19.09.18	중도금 6차 20.02.18	잔금 30% 입주시
1군	59A	204동 4,12호	72	3~4층	4	75,445,491	119,504,099	11,950,410	206,900,000	5,000,000	15,690,000	20,690,000	20,690,000	20,690,000	20,690,000	20,690,000	20,690,000	62,070,000
				5~7층	6	77,049,939	122,045,510	12,204,551	211,300,000	5,000,000	16,130,000	21,130,000	21,130,000	21,130,000	21,130,000	21,130,000	21,130,000	63,390,000
				8~9층	4	77,815,698	123,258,456	12,325,846	213,400,000	5,000,000	16,340,000	21,340,000	21,340,000	21,340,000	21,340,000	21,340,000	21,340,000	64,020,000
				10~30층	40	78,617,922	124,529,162	12,452,916	215,600,000	5,000,000	16,560,000	21,560,000	21,560,000	21,560,000	21,560,000	21,560,000	21,560,000	64,680,000
				31~최상층	18	80,185,905	127,012,814	12,701,281	219,900,000	5,000,000	16,990,000	21,990,000	21,990,000	21,990,000	21,990,000	21,990,000	21,990,000	65,970,000
		204동 13호	36	3~4층	2	74,716,197	118,348,912	11,834,891	204,900,000	5,000,000	15,490,000	20,490,000	20,490,000	20,490,000	20,490,000	20,490,000	20,490,000	61,470,000
				5~7층	3	76,247,716	120,774,804	12,077,480	209,100,000	5,000,000	15,910,000	20,910,000	20,910,000	20,910,000	20,910,000	20,910,000	20,910,000	62,730,000
				8~9층	2	77,049,939	122,045,510	12,204,551	211,300,000	5,000,000	16,130,000	21,130,000	21,130,000	21,130,000	21,130,000	21,130,000	21,130,000	63,390,000
				10~30층	20	77,815,697	123,258,457	12,325,846	213,400,000	5,000,000	16,340,000	21,340,000	21,340,000	21,340,000	21,340,000	21,340,000	21,340,000	64,020,000
				31~최상층	9	79,383,680	125,742,109	12,574,211	217,700,000	5,000,000	16,770,000	21,770,000	21,770,000	21,770,000	21,770,000	21,770,000	21,770,000	65,310,000
	59B	204동 2호	36	3~4층	2	75,445,491	119,504,099	11,950,410	206,900,000	5,000,000	15,690,000	20,690,000	20,690,000	20,690,000	20,690,000	20,690,000	20,690,000	62,070,000
				5~7층	3	77,049,939	122,045,510	12,204,551	211,300,000	5,000,000	16,130,000	21,130,000	21,130,000	21,130,000	21,130,000	21,130,000	21,130,000	63,390,000
				8~9층	2	77,815,697	123,258,457	12,325,846	213,400,000	5,000,000	16,340,000	21,340,000	21,340,000	21,340,000	21,340,000	21,340,000	21,340,000	64,020,000
				10~30층	20	78,617,922	124,529,162	12,452,916	215,600,000	5,000,000	16,560,000	21,560,000	21,560,000	21,560,000	21,560,000	21,560,000	21,560,000	64,680,000
				31~최상층	9	80,185,905	127,012,814	12,701,281	219,900,000	5,000,000	16,990,000	21,990,000	21,990,000	21,990,000	21,990,000	21,990,000	21,990,000	65,970,000
	84A	201동3,4호 202동3,4호 203동3,4호	234	3~4층	12	110,524,545	175,068,595	17,506,860	303,100,000	5,000,000	25,310,000	30,310,000	30,310,000	30,310,000	30,310,000	30,310,000	30,310,000	90,930,000
				5~7층	18	112,821,823	178,707,434	17,870,743	309,400,000	5,000,000	25,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92,820,000
				8~9층	12	113,988,693	180,555,734	18,055,573	312,600,000	5,000,000	26,260,000	31,260,000	31,260,000	31,260,000	31,260,000	31,260,000	31,260,000	93,780,000
				10~30층	120	115,119,099	182,346,274	18,234,627	315,700,000	5,000,000	26,570,000	31,570,000	31,570,000	31,570,000	31,570,000	31,570,000	31,570,000	94,710,000
				31~43층	72	117,416,376	185,985,113	18,598,511	322,000,000	5,000,000	27,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96,600,000
		201동2,6호		3~4층	14	110,524,545	175,068,595	17,506,860	303,100,000	5,000,000	25,310,000	30,310,000	30,310,000	30,310,000	30,310,000	30,310,000	30,310,000	90,930,000
				5~7층	21	112,821,823	178,707,434	17,870,743	309,400,000	5,000,000	25,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92,820,000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분양사업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대지경계선 밖은 당 사업부지가 아니며 인허가청의 계획변경에 따라 도로 패턴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의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소방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 및 건축허가도면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각 공급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불가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와 접하는 공간은 내 ·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 및 환기 등의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인허가관청의 인허가 조건(건축허가도면, 건축 심의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에어컨 실외기공간 설치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해당 관청 변경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있는 옥상, 휴게공간, 운동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오피스텔 저층부 판매시설 조명, 개별 상가 간판 등에 의해 일부 호실은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재산이며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마감수준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세부 계획 시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냉난방은 지역난방 열원을 이용하며, 난방방식은 바닥온돌 복사난방이 적용되고, 냉방시설은 실내 천정 카셋트형 팬코일 유니트 및 점검구가 설치되고 설치위치, 수량 등은 타입별, 호실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외기실 및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입주자가 개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일부세대는 도시가스는 공급되지 않으며, 오피스텔 천장내부에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 제2010-351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조치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지역 난방 시스템에 의해 비 냉난방 시에도 기본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202, 203, 204동 지붕 냉각탑의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소음, 진동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여름철 냉방 가동 시 천정의 FCU의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설계계획 상 이사 등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신발장 내부에 세대 전기통신함이 설치되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지자체 협의에 따라 본 공사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 후 최종 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홍보자료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시 각 타입에 따라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변경됩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및 색상,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실별, 층별, 위치 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피트니스 센터, GX룸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마감재,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는 일부만 제공되며, 집기 및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구성 및 실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은 공급자의 지위로서 분양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되, 수분양자에 대한 제반 관리 업무 및 코리아신탁(주)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계약 해제/해지시 분양대금 반환 채무 이행, 소유권이전 관련 업무, 하자보수 등)는 위탁자 디에스네트웍스(주)가 책임 처리하기로 하며, 코리아신탁(주)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갖지 않으며, 이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은 형식적인 시행사로서 코리아신탁(주)이 부담하는 사업주체(건축주) 및 분양권자로서의 의무나 책임을 디에스네트웍스(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코리아신탁(주)은 이의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분양대금수납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 포함)로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후 하자 포함, 단 설계상 하자 제외)은 ㈜포스코건설이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코리아신탁(주)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신탁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디에스네트웍스(주)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 디에스네트웍스(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된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건 축	전 기	소방 · 통신
회 사 명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태양유니스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무소
감리금액	₩9,551,069,146원	₩1,593,981,818원	₩1,368,000,000원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수탁사)	시공사	위탁사	분양대행사
상호	코리아신탁(주)	㈜포스코건설	디에스네트웍스㈜	위더스드림(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해성2빌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1길3 (서초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6로 21 인텔리움 센텀707호
법인등록번호	110111-2937831	174611-0002979	110111-0287048	180111-0501361
연락처	02-3430-2000	032-748-2114	02-3482-7441	051-747-163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표시사항

- 등록업자 : 코리아신탁(주)
- 부동산개발업등록번호 : 서울 090081(2009.10.12.)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8번지 일원**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1661-0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완성, 그 중심
The Sharp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분양문의 **1661-0026**

랜드마크시티 M1블록 | 총 3,472세대
[아파트 2,230세대 | 오피스텔 1,242실]

국제업무지구역(센트로드)
2 번출구
G타워
센트럴파크역
송도센트럴파크
채드윅송도 국제학교
인천대입구역
1 번출구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견본주택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8번지 일원 |

시행 : KOREA trust 코리아신탁 시공 : posco 포스코건설 위탁 : 디에스네트웍스